신 구 조 문 대 비 표

<table>
<tr><th>페이지</th><th>현행(2015년)</th><th>개정(2016년)</th><th>비고</th></tr>
<tr><td>알리는 글</td><td>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.</td><td>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(2015년 국고지원시설 확대)으로 분류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.</td><td>국고지원시설 포함</td></tr>
<tr><td>알리는 글</td><td>※ 시설관련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시설 담당과 및 사회서비스자원과에 문의하여 주시고,
~~- 사회복지시설 전자화시책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~~</td><td>※ 시설관련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시설 담당과 및 사회서비스자원과에 문의하여 주시고,</td><td>전자화시책 주관 부서 이관에 따름</td></tr>
<tr><td>알리는 글</td><td>-「근로기준법(근로개선정책과 소관)」~</td><td>-「근로기준법(근로기준정책과 소관)」~</td><td>고용노동부 직제변경</td></tr>
<tr><td>3</td><td>①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~㉕「장애아동복지법」</td><td>①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~㉕「장애아동복지법」 ㉖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</td><td>사복법 개정</td></tr>
<tr><td>4</td><td>사회복지시설의 범위</td><td>사회복지시설의 범위(미신고시설 판단 기준)</td><td>사회복지시설 운영 분야 외의 사업과 혼돈</td></tr>
<tr><td>5</td><td><table><tr><th rowspan="2">시설종류</th><th colspan="2">세부종류</th><th rowspan="2">관련법</th></tr><tr><th>생활시설</th><th>이용시설</th></tr><tr><td>정신보건시설</td><td>○정신요양시설
○사회복귀시설 중 생활(주거)시설</td><td>○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</td><td>「정신보건법」</td></tr></table></td><td><table><tr><th rowspan="2">시설종류</th><th colspan="2">세부종류</th><th rowspan="2">관련법</th></tr><tr><th>생활시설</th><th>이용시설</th></tr><tr><td>정신보건시설</td><td>○정신요양시설
○사회복귀 입소 생활시설, 공동생활가정, 단기보호시설, 중독자 재활시설</td><td>○사회복귀 주간 재활시설, 직업재활시설,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</td><td>「정신보건법」</td></tr></table></td><td>정신보건법 시행규칙 개정</td></tr>
<tr><td>5</td><td><table><tr><th rowspan="2">시설종류</th><th colspan="2">세부종류</th><th rowspan="2">관련법</th></tr><tr><th>생활시설</th><th>이용시설</th></tr><tr><td>사회복지관, 결핵·한센시설</td><td>o 결핵한센시설</td><td>o 사회복지관
o ~~상담보호센터~~</td><td>「사회복지사업법」</td></tr></table></td><td><table><tr><th rowspan="2">시설종류</th><th colspan="2">세부종류</th><th rowspan="2">관련법</th></tr><tr><th>생활시설</th><th>이용시설</th></tr><tr><td>사회복지관, 결핵·한센시설</td><td>o 결핵한센시설</td><td>o 사회복지관</td><td>「사회복지사업법」</td></tr></table></td><td>실체 모호 시설 삭제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>페이지</th><th>현행(2015년)</th><th>개정(2016년)</th><th>비고</th></tr>
<tr><td>5</td><td>
<table>
<tr><th rowspan="2">시설종류</th><th colspan="2">세부종류</th><th rowspan="2">관련법</th></tr>
<tr><th>생활시설</th><th>이용시설</th></tr>
<tr><td>성매매피해지원시설</td><td>o 일반지원시설
o 청소년지원시설
o 외국인여성지원시설</td><td>o 자활지원센터</td><td>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</td></tr>
</table>
</td><td>
<table>
<tr><th rowspan="2">시설종류</th><th colspan="2">세부종류</th><th rowspan="2">관련법</th></tr>
<tr><th>생활시설</th><th>이용시설</th></tr>
<tr><td>성매매피해지원시설</td><td>o 일반지원시설
o 청소년지원시설
o 외국인여성지원시설
o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</td><td>o 자활지원센터</td><td>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</td></tr>
</table>
</td><td>시행규칙 상 기존재한 시설->법률상 시설로 개편(승격)
- 여가부 요청 있음</td></tr>
<tr><td>6</td><td>
<table>
<tr><td>장애인</td><td>이용</td><td>o 지역사회재활시설</td><td>· 장애인복지관
· 장애인주간보호시설
· 장애인체육시설, 장애인수련시설, 장애인심부름센터
· 수화통역센터, 점자도서관,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</td><td>장애인권익지원과</td><td>장애인복지법</td></tr>
</table>
</td><td>
<table>
<tr><td>장애인</td><td>이용</td><td>o 지역사회재활시설</td><td>· 장애인복지관
· 장애인주간보호시설
· 장애인체육시설, 장애인수련시설,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
· 수화통역센터, 점자도서관,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</td><td>장애인권익지원과</td><td>장애인복지법</td></tr>
</table>
</td><td>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</td></tr>
<tr><td>6</td><td>
<table>
<tr><td rowspan="2">정신질환자</td><td>생활</td><td>o 정신요양시설
o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(~~~~)</td><td rowspan="2">정신건강정책과</td><td rowspan="2">정신보건법</td></tr>
<tr><td>이용</td><td>o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
-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(~~)</td></tr>
</table>
</td><td>
<table>
<tr><td rowspan="2">정신질환자</td><td>생활</td><td>o 정신요양시설
o 사회복귀 입소생활시설, 공동생활가정, 단기보호시설, 중독자재활시설</td><td rowspan="2">정신건강정책과</td><td rowspan="2">정신보건법</td></tr>
<tr><td>이용</td><td>o 사회복귀 주간재활시설, 직업재활시설,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</td></tr>
</table>
</td><td>정신보건법 시행규칙 개정</td></tr>
<tr><td>15</td><td>- 계약기간 : 5년 이내로 함</td><td>- 계약기간 : 가급적 5년으로 함</td><td>시행규칙 취지</td></tr>
<tr><td>17</td><td>(주의)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5조제2항제3호의 적용대상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(공로연수기간 포함)의 기간 내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의미하는 바, 3년이라는 기간 내에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의 근무경력 기간에 상관없이 적용됨</td><td>(주의)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5조제2항제3호의 적용대상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(공로연수기간 포함)의 기간 내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의미하는 바, 3년이라는 기간 내에서 직위와 관계없이 직제·직무 상 사회복지분야가 포함된 경우라 한다면 적용대상임</td><td>공직자윤리법 취지 반영</td></tr>
</table>

페이지	현행(2015년)	개정(2016년)	비고
20	* 시설장의 친인척 등 ~~시설장과~~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는 위원에서 제외	* 법인의 임원 또는 시설장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제외	제외대상 확대
22	-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(재적의원 1/3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) 수시회의 개최	-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(재적위원 1/3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) 수시회의 개최	법령용어로 변경
23	- 경과조치 : '0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근무한 종사자에 대한 유예기간(10년)은 '12년 6월 30일(1월부터 6월생) 또는 '12년 12월 31일(7월부터 12월생)로 종료됨	(삭제)	경과조치 종료에 따른 삭제
23	(신규)	□ 60세 초과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 ○ 공개모집 절차에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어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* 복지넷(www.bokji.net), 워크넷(www.work.go.kr),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(www.w4c.or.kr) 홈페이지 2곳 이상에 15일 이상 공개모집하였으나 2회 이상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 * 초과자의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되, 완료시점 전에 상기 방식으로 공개모집 절차 반드시 이행 ○ 2016년 기준 60세 도래 종사자의 기존 기본급 내에서 청년 인력(만29세 이하자)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* 신규 채용 및 인력 운용 계획을 시설운영위원회 및 법인 이사회를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(60세 도래 종사자 및 신규 채용 인력 2인의 인건비를 60세 도래 종사자의 기존 인건비 100% 내에서 지급하되, 60세 도래자의 인건비는 50%를 초과할 수 없음) * 청년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지급가이드라인 적용 ○ 공통사항 : 60세 초과자는 65세까지만 지원	인건비 지원 상한 특례규정 개설
24	○ 지급상한기준년	○ 지급상한기준년	개괄식 표 변경 및

페이지	현행(2015년)	개정(2016년)	비고
	-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 (표) - 설립자 및 직계가족 1세대가 아닌 시설장 (표) - 시설종사자 (표) ⇒ ~~2002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시설 또는 신규채용(재취업 포함)된 시설장, 종사자는 유예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지급상한을 적용함~~	- (표 묶음) ⇒2002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시설 또는 신규채용(재취업 포함)된 시설장은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지급상한을 적용함	적용년도 변경반영 유예기간 종료
25	(신규)	참고 보조금 전용카드란? ① 시설 보조금을 지출하기 위해 시설명의로 발급한 체크카드 ② 보조금 전용계좌를 출금계좌로 연결 ③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발급 및 거래내역 전송 ④ 클린카드 기능 탑재 * 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는 광역자치단체별로 계약한 금융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함	보조금카드 정의
30	~~4) 사회복지법인 이외에 보조금지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을 준용하여 보조금 집행 및 편성(보고)을 하도록 할 것~~ ~~※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(재단, 사단)에게 보조금을 보조하는 경우 법인의 정관, 사업의 목적 등이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맞는지 확인~~ ~~(예)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리규정, 법인목적사업 등에 「사회복지사업법」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~~	(삭제)	법인운영관리 부분
33	* 동 지원 기준은 공통적인 기준이므로, 개별시설 담당부서 지침 또는 지자체에 별도 규정을 우선 적용함	* (삭제)	同意의 문구 기 존재

페이지	현행(2015년)	개정(2016년)	비고
33	- (신설)	- 다만, 국고보조시설의 경우에는 본 지침보다 하향된 기준으로 하여 개별담당부서 또는 지자체의 별도 규정을 둘 수 없다.	국고보조시설의 최저 인정기준 동일화
37	거.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7조 ~ (이하 생략) ※ ㉮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, '15.1.1.부터 적용	거.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7조 ~ (이하 생략) ※ ㉮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, 경력합산은 '15.1.1.부터 적용	오타수정
37	- (신설)	버.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※ 종전근무경력은 인정하되, 경력합산은 '16.1.1부터 적용 서.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15조의3에 따라 설치된 광역자활센터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※ 종전근무경력은 인정하되, 경력합산은 '16.1.1부터 적용	유사경력 추가
40	→현역병 입영 후「병역법」에 의해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 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	→현역병 입영 후「병역법」에 의해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 경비교도, 의무소방원으로 전환하여 복무한 경력	병역법 반영
54	○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(2004년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」개정) ※ (신설)	○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(2004년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」개정) ※ 사회복지관 등 11개 유형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, 지역아동센터는 중앙지원단평가센터,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시설유형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 평가 실시	평가유형별 대상 시설 안내
54	○ 전체 사회복지시설(결핵시설 등 일부 제외)에 대하여 평가지표 개발, (후략)	○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위탁 평가하는 11개 유형에 대하여 평가지표 개발, (후략)	평가사무대상 시설 범위 반영
54	○ **제6기 3개년(2014-2016년) 평가대상시설** - (신설) - 총 평가대상시설 2,400여개소로 매년 500~1,000여개소 평가	○ **제6기 3개년(2014-2016년) 평가대상시설**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2조1에서 정의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시설 중 11개 유형(노숙인복지시설, 노인복지관, 노인양로시설, 아동복지시설, 사회복귀시설, 사회복지관, 장애인복지관, 장애인거주시설, 장애인직업재활시설, 정신요양시설, 한부모가족복지시설) - 총 평가대상시설 3,300여개소로 매년 500~1,900여개소 평가	제6기 대상 시설 열거

페이지	현행(2015년)	개정(2016년)	비고
55	○ 2015년도 평가대상시설 - 사회복지관, 노인복지관, 노인양로시설,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2012년 1월1일 이전 설치신고된 시설(단,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개인시설은 제외)	○ 2016년도 평가대상시설 - 아동복지시설, 장애인거주시설(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신규 포함),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2013년 1월 1일 이전 설치신고된 시설(단,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개인시설은 제외)	2016년 평가대상 시설 반영
55	○ 평가대상시설 선정 방법 - 보건복지부에 시·도에 평가대상시설 명단 알림 → 시·도에서 변경사항 확인하여 확정 ○ 평가대상기간 : 2012년 1월 1일 - 2014년 12월 31일	○ 평가대상시설 선정 방법 - 대상시설 확인 요청(보건복지부) → 대상시설 확인 통보(지자체) → 대상시설 확정(보건복지부) ○ 평가대상기간 : 2013년 1월 1일 - 2015년 12월 31일	선정방식 변경 및 평가기간 변경
56	다. 2015년 시설평가 일정 (개요식)	다. 2016년 시설평가 일정 (추진일정표 형식으로 변경)	일정표 형식으로 변경
57	라. 서비스품질관리 ○ 목적 :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운영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시설의 품질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('09년부터 실시 중) ○ 대상시설 : 전년도 시설 평가결과 미흡시설(지자체 직영시설 포함) 및 품질관리를 희망하는 신규시설 ○ 지원내용 - 품질관리 대상시설의 ~~ - 품질관리 대상시설 ~~ ○ 추진 일정 - (신설) - 서비스품질관리위원 선정 및 교육(1~3월) - 지원대상시설 방문 및 컨설팅 지원(3~11월, 4회) - 서비스품질관리 결과 평가회(12월)	라. 서비스품질관리(인센티브 및 서비스품질관리) ○ 목적 :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시설(개선시설 포함)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동기를 부여하고, 운영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 등 사후관리를 통해 시설의 품질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('09년부터 실시 중) ○ 대상 시설 : - 인센티브 : 전년도 시설 평가 결과 우수시설 - 품질관리(컨설팅 지원) : 전년도 시설 평가결과 미흡시설(지자체 직영시설 포함) 및 품질관리를 희망하는 신규시설 ○ 지원내용 (표 형식으로 변경) ※ 평가 우수시설 및 개선시설, 운영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및 컨설팅 내용 및 예산 범위는 평가년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○ 추진 일정 - 우수시설 인센티브 지원(3~4월) - 서비스품질관리위원 선정 및 교육(1~3월) - 지원대상시설 방문 및 컨설팅 지원(3~11월, 4회) - 서비스품질관리 결과 평가회(12월)	사후관리의 방식 열거 사후관리대상시설 추가 우수시설에 대한 지원 시기 명시

<table>
<tr><th>페이지</th><th>현행(2015년)</th><th>개정(2016년)</th><th>비고</th></tr>
<tr><td>58</td><td>※ 2016년도 평가대상시설 : 아동복지시설, 장애인거주시설, 장애인직업재활시설</td><td>※ 2017년도 평가대상시설 : 장애인복지관, 정신요양시설, 사회복귀시설, 노숙인복지(자활, 요양, 재활)시설</td><td>평가대상시설</td></tr>
<tr><td>59</td><td>○ 보건복지부분야 사회복무요원의 정의
-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, 보건·의료, ~~교육·문화, 환경·안전~~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병역자원</td><td>○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의 정의
-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, 보건·의료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병역자원</td><td>비적용 분야 삭제</td></tr>
<tr><td>60</td><td>○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주요업무 및 교육훈련
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주요업무</th><th>교육훈련</th></tr><tr><td></td><td>이 하 생 략</td><td></td></tr></table></td><td>○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복무 분야 및 업무
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근무기관</th><th>주요업무</th></tr><tr><td></td><td>이 하 생 략</td><td></td></tr></table></td><td>오타수정</td></tr>
<tr><td>62</td><td>- 심화직무교육 : 3일, 19시간
[표]</td><td>- 심화직무교육 : 3일, 19시간
[표] : 심화과정, 아동심화과정으로 구분</td><td>심화직무교육 유형 분류 및 세부사항 부연</td></tr>
<tr><td>63</td><td>○ '15년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인원
- 기본직무교육 9,947명
- 심화직무교육 4,200명</td><td>○ '16년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인원
- 기본직무교육 10,891명
- 심화직무교육 5,081명</td><td>'16년 교육대상 수정</td></tr>
<tr><td>63</td><td>○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통지서 교부 시 지자체 등 복무기관 협조사항
- 법적근거 : 병역법 제33조의2 및 병역법 시행령 제67조 및 제68조,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무요원 교육운용규정</td><td>○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통지서 교부 시 지자체 등 복무기관 협조사항
- 법적근거 : 병역법 제33조의2 및 병역법 시행령 제67조 및 제68조,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무요원 교육운영규정</td><td>자구수정</td></tr>
<tr><td>63</td><td>- 통지서 교부절차
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권역별 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 복무기관장~~(시·군·구청장 등)~~에게 『직무교육 통지서』 발송</td><td>- 통지서 교부절차
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권역별 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 복무기관장에게 『직무교육 통지서』 발송</td><td>중복삭제</td></tr>
<tr><td>63</td><td>② 복무기관의 장은 소속 사회복무요원에게 직무교육통지서 교부</td><td>② 복무기관의 장은 소속 사회복무요원에게 직무교육통지서 교부(교육일 14일 전까지)</td><td>'병역법에서 정한 통지서 교부 기한 추가</td></tr>
<tr><td>63</td><td>③ 복무기관은 『직무교육 통지서 교부결과』를 교육개시 5일 전까지 해당 사회복무교육센터로 회신</td><td>③ 복무기관은 『직무교육 통지서 교부결과』를 교육 시작일 전까지 해당 사회복무교육센터로 회신</td><td>사회복무요원 교육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 내용 반영</td></tr>
</table>

페이지	현행(2015년)	개정(2016년)	비고
63	- 직무교육 기일연기 사유 발생 시 『직무교육 기일연기신청서』와 증빙서류를 교육개시 5일전까지 복무기관에서 해당 사회복무교육센터에 제출	- 직무교육 기일연기 사유 발생 시 『사회복무요원 교육기일 연기신청서』와 증빙서류를 교육 시작일 전까지 복무기관에서 해당 사회복무교육센터에 제출	사회복무요원 교육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 내용 반영
65	○ 사회복무요원 배정 기본 방향 -사회복지~~서비스~~ 분야 우선 배정, 자격·전공, 적성, 희망 등 고려	○ 사회복무요원 배정 기본 방향 -사회복지분야 우선 배정, 자격·전공, 적성, 희망 등 고려	자구수정
71	(다중이용시설의 장) ■ 실종아동 등이 신고되는 경우 ~~ ■ 시설 · 장소의 종사자에게 ~~	(다중이용시설의 장) ■ 실종아동 등이 신고되는 경우 ~~ ■ 시설 · 장소의 종사자에게 ~~ ■ 경찰관서에 교육실적 보고	의무사항 추가
77	~~(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 소관)~~	삭제	소관부서 변경
79	~~1.~~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~~시책 개요~~	1.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	개요명 변경
79	가. 목적 ○ 행복e음(사회복지통합관리망) 구축과 ~~	가. 목적 ○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 구축과 ~~	용어변경
80	라. 용어의 정의 ○ 행복e음(사회복지통합관리망)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6조의2 규정에 의해 사회복지시설 업무에 ~~	라. 용어의 정의 ○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 : 「사회보장기본법」제37조 규정에 의해 사회복지시설 업무에 ~~	용어 및 근거법 변경
80	○ 자체개발정보시스템 : 사회복지시설 등이 C/S방식 또는 WEB방식으로 민간업체가 개발 · 보급한 상용S/W를 구입하거나 자체개발하여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으로,	○ 민간개발정보시스템 : 사회복지시설 등이 민간업체가 개발/보급한 상용S/W를 구입하거나 자체개발하여 사용하는 정보시스템	민간개발시스템의미 명확화
81	마.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	2.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활용	상위 단위로 편성
81	(신설)	(추진경과 추가) - 14년 :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고도화(2차) 구축 사업 - 15년 : 사회복지시설 평가, 안전 기능 확대	경과 사항 추가
82	2) 운영기관 ○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	3) 운영기관 ○ 사회보장정보원	기관명 변경

페이지	현행(2015년)	개정(2016년)	비고
82	○ 통합회계관리 - 회계관리, 예산관리, 세무관리, 인사관리, 급여관리, 자산(비품, 소모품)관리 (신설)	○ 통합회계관리 - 회계관리, 예산관리, 세무관리, 인사관리, 급여관리, 자산(비품, 소모품)관리 (업무흐름도 추가)	업무흐름도 추가
82	○ 통합고객관리 (신설)	○ 통합고객관리 (업무흐름도 추가)	업무흐름도 추가
82	○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서비스 이력관리(11종) (신설)	○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서비스 이력관리(11종) (시설유형별 이력관리 업무 표 형식으로)	시설 유형별 이력관리 유형 열거(표)
83	○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(모니터링 포함) - 시설의 온라인 보고정보를 ~~~~	(삭제)	삭제
83	(신설)	○ 중앙부처 및 지자체 시설 관리업무 지원 - 시설정보시스템 수집정보를 기반으로 보건복지부,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통계(시설현황, 입소자, 종사자 현황 등) 및 정책기초자료 제공	지원사업 설명
83	○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	(삭제)	행정지원시스템으로 변경
83	○ 실종자 · 무연고자 ~~~ ○ 시설 후원금에 대한 '국세청 ~~	○ 시설업무 관련 대외기관 정보 연계 - 경찰청 '사회적약자 종합관리시스템' 연계 ※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실종자(무연고자)로 등록되어 있는 노인, 아동, 장애인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 및 복귀 지원 - 시설 후원금에 대한 '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계' ※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후원내역을 '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'와 연계하여 후원자의 연말정산 편의성 제고 및 시설 후원금 관리 투명성 확보 (서식 1 및 표 삭제)	대외기관 정보 연계 항목으로 통합
83	5) 기대효과	(삭제)	

페이지	현행(2015년)	개정(2016년)	비고
83	바. 사회복지시설 모니터링 및 통계시스템	(삭제)	행정지원시스템으로 변경
84	2. 사회복지시설 온라인보고 업무 ~~가.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강화~~	3.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 가. 온라인 보고 개요	간략화
86	○주요보고서식 보조금정산보고 : 보조금정산보고서, 보조금정산내역서(명부 포함), 총계정원장, ~~서비스제공이력(이용시설의 경우)~~	○주요보고서식 보조금정산보고 : 보조금정산보고서, 보조금정산내역서(명부 포함), 총계정원장	연계항목 미운영
86	(표 내) 지역아동센터 영역 변경	(표내) 지역아동센터 영역 변경	지역아동센터 영역 변경
92	- 민간 서비스 연계 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의뢰내역 전송 및 결과 확인	(삭제)	민간사례관리시스템 이후 개선사항에 해당
93	6) 자활사업단 운영보고 (신설)	6) 자활사업단 운영보고 (자활정보시스템으로 기능 이관 예정)	자활정보시스템구축 사업 명시
94	다. 행복e음(시설 및 법인관리) 주요업무 1) 행복e음(시설 및 법인관리) 관련 주요업무	다.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 시설 관련 업무 1)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 시설 관련 업무	일부 법인기능 부재에 따른 용어 개선
96	○ 시장.군수.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인터넷(시.군.구 홈페이지) 등을 통하여 3개월간 공개(신설) ○ 같은 기간 동안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(신설)	○ 시장.군수.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인터넷(시.군.구 홈페이지) 등을 통하여 3개월간 공개(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시 시 인터넷 공개 생략 가능) ○ 같은 기간 동안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(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시 시 인터넷 공개 생략 가능)	시스템 공시 기능
100	~~붙임 1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 주요 기능 안내 서식 1~~	(삭제)	통계기능은 행정지원 시스템으로 이관

페이지	현행(2015년)	개정(2016년)	비고
117	(신규)	○ 급여명세서를 시설장 및 종사자에게 발급	근로자급여 상세정보 전달
131	◎보험가입 의무 관련 「사회복지사업법」개정 · 시행안내 * '14.6.부터 모든 (중략) 힘쓸 것. (신설)	◎보험가입 의무 관련 「사회복지사업법」개정 · 시행안내 * '14.6.부터 모든 (중략) 힘쓸 것(법규정을 동시에 충족하는 통합상품도 존재하므로, 반드시 보험이 2건 이상일 필요는 없음) - 화재보험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제1항제1호의 '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보험'에 해당하지 않음(*통칭 '영업배상책임보험(공제)'이 화재사고를 포함하여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보험(공제)에 해당함) -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하므로, 보험가입 시 관련규정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유의	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부연설명
134	○ 시 · 도 및 시 · 군 · 구에서는 하 · 동절기(4월 및 11월경) 등 취약시기에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하는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종사자 대상 교육훈련* 및 안전점검조사표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	○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서는 하·동절기(4월 및 11월경) 등 취약시기에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하는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종사자 대상 교육훈련* 및 안전점검표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	양식명 변경
134	(신설)	○ 시설안전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는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고 -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지자체에 보고하며, 지자체는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결과 보고 및 안전점검 이력관리 수행	온라인 보고 사항 수록
137	(신설)	* 피난훈련 시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모의대피훈련 동영상(보건복지부 홈페이지 - 정보 - 홍보 - 동영상 코너에서 조회 또는 유투브에서 '모의 대피'로 검색)을 참고하여, 시설 유형에 맞는 효과적인 대피훈련 실시	교육 · 훈련 사항 추가
137	(신설)	5. 시설 설치신고 시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 확인 ○ 시설 설치 신고 시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 확인 의무(지자체) 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개정('15.6.26)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소방관계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함 ※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해당 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6.26.>	소방법 준수 강조

페이지	현행(2015년)	개정(2016년)	비고
139	(신설)	6. 재난 · 안전 관련 주체별 주요 임무	안전관리 주체별 임무 표기
154	(신설)	- 다만,「영유아보육법」제2조에 따른 어린지집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.	재무회계규칙 개정
154	(예시) '12.10.에 추경예산으로 확정된 국고보조금이 '13.1.에 입금되었을 경우 →'12년도 회계로 구분	- (삭제)	보조금 지급주체자의 13월 지출 불가
155	마. 출납기한 ○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 · 세출의 출납에 ~~관한 사무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~~ 완결해야 함 ~~※ '14년도 법인예산의 경우 '15.2.28까지 완결해야 함~~	마. 출납기한 ○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 · 세출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해야 함 ※ (삭제)	재무회계규칙 개정
155	~~- 다만,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복식계정 코드 마련 등 시스템 사용 준비가 완료되는 2015년 이후부터 의무화 함.~~	- (삭제)	미이행사항
156	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 · 세출 명세서를 시군구, 법인,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※ ~~(삭제)~~	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 · 세출 명세서를 시군구, 법인,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※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재하거나「영유아보육법」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공시로 갈음 가능	재무회계규칙개정
160	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 · 세출 결산서를 시군구, 법인,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※ ~~(삭제)~~	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 · 세출 결산서를 시군구, 법인,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※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재하거나「영유아보육법」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공시로 갈음 가능	재무회계규칙 개정
166	○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(중략)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 · 후원자에게 ~~즉시~~ 교부 ※ 이 경우 후원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발급 생략할 수 없음	○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(중략)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 · 후원자에게 교부 ※ 이 경우 후원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발급 생략할 수 있음	규첵에 없는 문구 삭제 오타수정
168	※ 시 · 도가 관할하는 법인의 경우, 관할 시 · 도에 제출하여 공개 또는 관할 시 · 도가 지정하는 시 · 군 · 구에 제출하여 공개	(삭제)	재무회계규칙 위배
168	※ 시 · 군 · 구,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에 후원금 사용결과를 단기간 공개하는 현재 제도로는 후원자가 후원한 결과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, 차후 공시방안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예정	※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게시하는 경우, 시 · 군 · 구,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에 공고한 것으로 갈음	공시방식 추가로 대체

<table>
<tr><th>페이지</th><th>현행(2015년)</th><th>개정(2016년)</th><th>비고</th></tr>
<tr><td>170</td><td>•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,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~~아 자침~~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(명절휴가비, 시간외근무수당~~등~~, 가족수당), (후략)</td><td>•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,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”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(명절휴가비, 시간외근무수당, 가족수당), (후략)</td><td>가이드라인의 지침 제외</td></tr>
<tr><td>171</td><td><table><tr><th>과목</th><th>직접비</th><th>간접비</th></tr><tr><td>운영비</td><td>○ 공공요금
○ 차량비
○ 연료비</td><td>○ 여비
○ 수용비 및 수수료
○ 제세공과금
○ 기타운영비</td></tr></table></td><td><table><tr><th>과목</th><th>직접비</th><th>간접비</th></tr><tr><td>운영비</td><td>○ 공공요금
○ 차량비
○ 연료비
○ 여비
○ 수용비 및 수수료
○ 제세공과금</td><td>○ 기타운영비</td></tr></table></td><td>직간접비 규정 변경</td></tr>
<tr><td>172</td><td><table><tr><th>과목</th><th>직접비</th><th>간접비</th></tr><tr><td>운영비</td><td>○ 공공요금
○ 차량비
○ 연료비</td><td>○ 여비
○ 수용비 및 수수료
○ 제세공과금
○ 기타운영비</td></tr></table></td><td><table><tr><th>과목</th><th>직접비</th><th>간접비</th></tr><tr><td>운영비</td><td>○ 공공요금
○ 차량비
○ 연료비
○ 여비
○ 수용비 및 수수료
○ 제세공과금</td><td>○ 기타운영비</td></tr></table></td><td>직간접비 규정 변경</td></tr>
<tr><td>266</td><td>Ⅲ.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: ~~정보화담당관~~</td><td>Ⅲ.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: 사회서비스자원과</td><td>담당부서 변경</td></tr>
</table>